

교육봉사활동 세부 업무처리 기준

제정 2019. 8. 27

개정 2021. 8. 18

제1조(목적) 이 업무처리 기준은 전남대학교 교직원과정 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업무처리 기준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)부터 교직원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세부 이수기준)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60시간(1학점 당 30시간)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(대상 기관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한국 학교
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

5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6.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·특수학교

7.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 해당)

② 지방자치단체, 시·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한다.

③ 영리기관·단체,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④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.

제6조(대상기관 선정)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대학 또는 해당 학과 및 전공에서 각 학과 및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
제7조(활동 영역) ①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,

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 학생 지도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. 다만, 청소, 시험감독,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수업시간 외의 시간(점심시간, 아침활동 시간, 방과 후 시간)을 교육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교육활동(아침 자율 학습 지도, 급식 지도, 교재연구 등)에 참여해야 한다.

③ 중등예비교원의 경우,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교육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시·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센터(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)에서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(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 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 확인: 광역문해기관, 프로그램운영기관, 학력인정 기관 등)

제8조(인정 범위) ①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.

②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등 실비 이외 보수나 금전(장학금 포함)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. 다만, 시·도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방안인 온라인 멘토링 활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- 제9조(이수 절차) ①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시 전 전남대학교 포털에 계획서를 작성·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에는 [별표1]에 의한 교육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전남대학교 포털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의 경우 확인서 등록시 대상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(비영리기관 인가증,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)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강좌개설)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, 학부와 교육대학원 각각 개설한다.

제11조(학점취득) ①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누적 60시간 이상(예정되는 학기 포함)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,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성적은 S(이수)/U(미이수)로 평가한다.
- ③ 시간 부풀리기, 위장 활동,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학점을 취소한다.
- ④ 편입학생의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여부는 우리대학교 편입학생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른다.

제12조(실시 시기)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. 다만,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5조 제②항의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중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승인된 계획서의 교육봉사 활동까지만 인정한다.

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「전남대학교 교직원과정 이수자 ‘교육봉사 활동’ 교과목 운영 지침(2013. 8. 14.)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